대한비과학회 기획위원회 규정

2015년 9월 20일 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비과학회 기획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대한비과학회의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학회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신규사업을 수립함으로써 학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회업무 및 주요행사의 기획
2. 학회발전을 위한 정보 및 여론 수렴, 정책, 신규사업의 개발, 홍보 및 실행
3. 비과의 제반 문제점 파악
4. 각종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건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

제4조(구성) 본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이사가 되고 위원은 기획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가능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대한 비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3.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이사가 임명하고, 행사의 규모에 따라 2인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본 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 시에는 서면이나 위임 위원의 결의도 인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및 서명 날인 보관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며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정) 본 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